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저작권 등의 침해시 범죄수익금 몰수 〉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45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저작권 등의 침해시 범죄수익금의 몰수 ..... | 2 |
| ※ 참고자료 .....                  | 6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석준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7. 30.

다. 회 부 일 : 2025. 7. 3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권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저작권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 Ⅲ. 검토의견

#### 1. 저작권 등의 침해시 범죄수익금의 몰수

##### 가. 개정안 요지

-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안 제139조).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단서 신설> | 제139조(몰수) -----<br>-----<br>-----<br>-----<br>-----<br>-----속하거나 그로 인한<br>수익금은-----. 다만, 이를<br>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br>가액을 추징한다.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139조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그러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한 반면, 저작권법에 이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이 잃는 손실보다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 등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도 범죄수익금의 몰수 또는 가액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1)</sup>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1호가목<sup>2)</sup>은 동 법의 적용대상

---

1) ‘누누티비’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동 법률에 근거하여 징역 3년 및 범죄수익 약 7억 원의 추징이 선고된 사례가 있음(1심 기준).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벌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이 되는 ‘특정범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3)의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 이 기준에 해당함.

-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이 위법성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범죄수익금의 몰수·가액 추징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7조(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공표한 자)<sup>4)</sup>나 제138조(출처 미명시

-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항공기·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 3)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4)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등)5)와 같은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과도한 제재가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중심으로 몰수 및 추징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376 |

5)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5. 3. 25.>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 법률명           | 조문내용(조항)                                                                                                                                                                                                                                                                                                                                                                                                                                                                                 |
|---------------|------------------------------------------------------------------------------------------------------------------------------------------------------------------------------------------------------------------------------------------------------------------------------------------------------------------------------------------------------------------------------------------------------------------------------------------------------------------------------------------|
| 특허법           | <p><b>제225조(침해죄)</b>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231조(몰수 등)</b> ①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p>                                                                                                                                                                                                                                                                                 |
| 상표법           | <p><b>제230조(침해죄)</b>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236조(몰수)</b>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 디자인보호법        | <p><b>제220조(침해죄)</b>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228조(몰수 등)</b> 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p> <p>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p><b>제44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li> <li>1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li> <li>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li> <li>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p><b>제67조(몰수)</b>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